

##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징구용)

### 1.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<b>제1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2조 (용어정의)</b>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1~9. &lt;생략&gt;</p> <p>10. "접근매체"라 함은 결제제도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가.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<b>공인인증서</b> 다.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.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.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바. 기타 은행과 이용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적 정보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<b>제3조 ~ 제19조 &lt;생략&gt;</b></p>	<p><b>제1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2조 (용어정의)</b>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1~9. &lt;좌동&gt;</p> <p>10. "접근매체"라 함은 결제제도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가.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<b>인증서</b> 다.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.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.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바. 기타 은행과 이용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적 정보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 <p><b>제3조 ~ 제19조 &lt;좌동&gt;</b></p>	<p>-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</p>

2. 개정시행일 : 2020년 12월 21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